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선거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 13조에 규정된 임원선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임원선출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아울러 본 규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및 해산) 본 협회는 임원선출 총회에서 원만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임원선출 선거가 완료된 후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3조(조직 및 임무) 위원회는 5인 이내로 조직하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상호 호선으로 선출한다. 단, 현 집행부의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및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임원선출 총회일의 최소한 60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와 관련한 제반 업무의 주관
2. 선거인(유자격 회원) 명부작성
3. 이사장후보자 등록업무 관리
4. 이사장후보자 자격심의
5. 후보자 및 운동원의 불법 선거운동 감시 및 제재
6. 투표, 개표 진행 및 검표
7. 당선자 발표
8.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4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고,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3 장 임원 후보자격

제5조(이사장 후보)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과거 혹은 현재에 협회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은 등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타 유관 협회의 대표자가 아닌 자로 한다. 특히 협회에 부채를 안긴 전직 이사장의 재출마의 경우 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그 자격을 부여한다.

제 4 장 입후보자 등록

제6조(후보등록)

- ① 이사장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본 협회 사무국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해야 한다. 후보등록일은 최소한 등록마감 15일 전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등록마감일은 공고 후 15일 이내로 한다.
- ② 이사장후보자는 부이사장 후보 2인과 한 조로 등록하여야 하며 투표 역시 한 조가 되어 일괄 투표한다. 단, 이사장 후보등록 시에 한 조로 등록한 부이사장후보는 등록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이사장 입후보자 등록 및 제출서류)

1. 추천서(회원 5인 이상 추천자 명단)
2. 출마소견서(협회양식)

제8조(결격사유) 위원회는 이사장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 후 5일 이내 소명기회를 주어 결격사유를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 5 장 선거방법

제9조(선거원칙) 본 규정에 입각하여 총회에서 선거를 공명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시행한다.

제10조(선거인 등록 및 공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에 해당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임원개선총회 15일전까지 개별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인 자격)

- ① 회비(총회개최 전년도 분까지)를 미납하거나 징계중인 자, 임원개선총회 개최 전년도 8월 말일 이후 입회승인을 받은 자는 선거인 자격을 가질 수 없고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 ② 선거인 자격은 회원자격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말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제12조(투표권) 본회의 정관에 의해 선거인 자격이 인정된 자로서, 총회 참석자에 한하여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선거방법)

- ①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유효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시행하여 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총회 참석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당선된다.

제 6 장 선거운동 및 투표

제14조(선거 공영의 원칙) 모든 선거절차는 본 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공명하게 집행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누구도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제15조(소견발표) 이사장 입후보자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소견을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총회에서 10분 이내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운동의 제한) 각 입후보자와 그의 운동원들은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되며, 총회 당일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불법행위)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을 거쳐 후보자격 상실, 회원자격상실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분명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 7 장 기 타

제18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선거관련사항은 통상적인 선거관례에 따른다. 그로 인하여 마찰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얻는다.

부 칙

1. 2008년 12월 이사회 의결
2. 2009년 12월 22일 이사회 의결
3. 2014년 12월 10일 이사회 의결